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동향 설명 자료

DDA/FTA 농수산물분야 협상 동향

2011. 3. 2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I. WTO/DDA 협상 동향 1

[1]	협상 진행동향	3
[2]	금년 협상전망	4
[3]	농업 협상	4
[4]	수산물보조금 협상	7
[5]	수산물 관세 협상	11
	[참고 1] 농업협상 진행경과	12
	[참고 2] 각 협상별 주요 내용	13
	[참고 3] DDA 협상 주요 절차	14
	[참고 4] 농업협상 세부원칙 잔여쟁점 논의내용	15
	[참고 5]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	16
	[참고 6] 수산물보조금 협상 우리 제안서 주요내용	26

II. FTA 협상 동향 27

[1]	FTA 협상 개요	29
[2]	한·호주 FTA	30
[3]	한·콜롬비아 FTA	31
[4]	한·터키 FTA	32
[5]	한·중 정부간 사전협약	33
[6]	한·일 FTA	34
[7]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35
[8]	한·페루 FTA	36
[9]	한·뉴질랜드 FTA	37
	[참고 자료]	38

I . WTO/DDA 협상 동향



- '01. 11월 UR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07. 7월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된 이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
-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 지속
 - * 미국은 협상 출범 당시에 비해 주요 개도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으므로, 이들 국가가 변화된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
- '10.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11년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분야별 다자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
 - '11. 1월말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DDA 통상장관회의에서 금년 내 DDA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 재확인
- Lamy WTO 사무총장은 본인이 제시한 협상일정에 따라 올해 4월 중에 쟁점을 최소화 한 수정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한편, 주요국(G7, G11) 간 협상 분야별 주고받기식 협상을 독려
- 현재 의장 중심 회의보다도 주요국 간 관심품목 양자협상 및 협상 분야 간 균형 확보 위주로 협상 진행
 -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은 비농산물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나, 브라질 등 개도국은 농업부분의 개방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중
 - 미·중, 미·인도 양자협상의 등 주요국간 양자협약도 활발히 진행

2

금년 협상전망

- ☐ 금년이 DDA 협상 타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형성되어 있어 협상 참여 및 관심도는 '08년 7월 각료회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 ☐ 그간 DDA 협상 교착의 원인인 미국과 주요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G5 국가(미국, EU, 인도, 중국, 브라질)간 양자 협상을 통해 좁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
- 핵심쟁점에 대한 중도적 타협안 마련 여부가 협상 타결을 좌우할 전망

3

농업 협상

가 협상 동향

- ☐ '08.12월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기초로 협상 진행중
- ☐ Lamy WTO 사무총장이 제안한 협상일정에 따라 연내 협상 타결할 수 있도록 활발히 협상 진행
- 올해 들어 매월 협상이 개최되고 있으며, 세부원칙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가 실무회의·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음
- * 예상 협상일정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1/4분기) → 세부원칙 타결(하계휴가 전) → 양허표 작성 및 검증절차(하반기)
- ☐ 각 그룹별 협의 및 양자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
- 개도국그룹(G33)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문안수정 협의 진행
- 수입국그룹(G10) : 민감품목·관세상한 등 핵심쟁점에 대한 공동 입장조율
- 3월 7일주간에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양자협의 진행

나 주요 쟁점

◆ 세부원칙 잔여쟁점(10개)

- 농업의장은 시장접근분야 8개, 국내보조 분야 2개 등 총 10개의 잔여쟁점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

* ①특별품목 ②개도국 특별긴급관세 ③관세상한 ④민감품목 ⑤관세단순화 ⑥TRQ 신설 ⑦열대작물 ⑧특혜잡식 ⑨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면화

- 그러나, 최근 전체 협상 목표 수준 상향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상기 쟁점들 외의 쟁점에 대해 다시 협상이 진행될 여지도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주요 농산물이 고관세이면서 실행세율·양허세율 간의 차이가 없는 관세구조인 바,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의 쟁점 협상에 중점적으로 대응 중

- (특별품목) 지정 가능한 품목의 수(세부원칙 4차 수정안 내용상 전체 품목의 12%)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특별품목 : 일반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 허용

- 수출국들은 현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그룹(G33)은 이를 재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구제조치 수준 등에 대해 협상 중이나, 수출국이 동 조치 남용을 우려해 진전은 별로 없는 상황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시 또는 수입 가격 급락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도국만 허용

- UR 양허관세를 초과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UR 양허관세 초과 SSM)에 대해 수입개도국과 수출국들 간 큰 입장 차

☐ (관세상한) 적용 예외 품목 수 및 그에 대한 보상수준에 대해 수입국과 수출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관세상한 : 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 결과, 관세가 100%(개도국은 150%)를 초과할 경우 100%(개도국은 150%)를 상한으로 적용

○ 현재 세부원칙 문안 상 특별품목은 관세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국의 문제제기로 재논의될 가능성

☐ (민감품목) 민감품목 개수 등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나 수출국 · 수입국 간 입장차이가 있음

※ 민감품목 : 일반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관세 감축이행 기간 단축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품목

다 **향후 대응계획**

☐ 새로운 세부원칙 작성 논의 대응을 위해 주요 쟁점별 우리 입장을 제검토

☐ 공조그룹(G33, G10)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

○ 특히,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논의시 G33과 공조하여 우리측의 이익 반영 필요

※ G33 : 특별품목, SSM에 중점을 두는 개도국 그룹(우리나라,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등 46개국)

※ G10 : 농산물 수입국 그룹(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9개국)

☐ 세부원칙 타결이후 단계에 대해 철저히 대비

○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특별 · 민감품목 선정, 이행계획서안 작성 등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 검토

☐ 협상 동향에 대해 언론 및 품목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가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FFG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

* FFGs(Fish Friends Groups, 11개국) :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페루, 미국,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 '07. 11월 규범의장은 수산보조금협정 의장안 발표

○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의 대부분 금지

- 면세유가 출어비의 4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 '09년 수산보조금 1조 7천5백억원 중 1조 3천억원 정도가 금지대상(면세유 7천 8백억원)

□ '10. 9월 우리나라는 면세유, 어항시설 보조금 등이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서 제출, 10월·12월 회의에서 논의

○ 면세유 등 운영비를 금지범위에서 제외,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자원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사후 정지토록 함

- 영세 소규모 어업인에 대하여는 선개도국 공히 보조금 허용

□ Lamy WTO 사무총장이 금년 4월까지 새로운 협정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협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 소그룹회의, 양자협의 등 다양한 협의 절차(Cocktail Approach)에 따라 합의점 모색중

나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 협정의 적용범위

-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제외

□ 금지보조금의 범위

○ 의장안

-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전 ⑥소득 보전 ⑦입어료 ⑧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FFG 국가는 의장안을 지지하는 강경입장 고수
-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 대폭축소 주장
 - 우리나라는 의장 텍스트가 기초하고 있는 금지-예외의 이중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치가능보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제안서 제출('09. 11월 및 '10. 9월)
 - 일본은 유류보조금을 금지로 분류하는 제안서 제출('11. 1월)

□ 개도국 특별대우

- 칠레, 브라질 등 강경 입장 개도국들은 의장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는 폭넓은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
- FFG 및 EU 등 대다수 회원국은 개도국의 과도한 특별대우 요구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입장 표명

□ 유류 보조금

- 유류보조 금지가 대세이기는 하나, 유류관련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우리나라는 각국의 상이한 조세체계와 유류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금지는 부적절하며, 세계 평균 유류가격을 기준으로 보조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

-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한국, 일본, EU 등 공조국
-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책은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라는 입장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FG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 수산보조금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2007년도 의장초안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기본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
- FFG는 의장안의 포괄적 금지 적극 지지
- 개도국은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공해어업보조금의 허용 등 특별 대우 확대 요구
- 한국, 일본, EU, 대만 등 공조그룹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 하면서 금지보조금 대폭 축소를 주장하나 수적 열세
- ※ 일본은 유류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 포함하는 제안서 제출('11.1.)

- ☐ WTO 라미 사무총장은 수산보조금협정이 수산자원보호 관련 환경단체를 설득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DDA 패키지에 포함 희망
- ☐ 금년이 DDA 협상 타결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긴박감이 형성되어 있어 협상 참여 및 관심도는 높은 수준
- 의장 수정안 작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될 1/4분기가 DDA 협상의 연내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임

라	향후 협상 일정
----------	-----------------

- ☐ 3. 28 주간 : 각국 제안서 등 쟁점사항 협의
- ☐ 대사급 소규모 회의 및 회원국간 비공식 협의 별도 진행
- ☐ 4월말 이전까지 의장 수정안 작성 목표로 협상중

마	대응 방안
----------	--------------

- ☐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강화
 - 다수국가가 지지하고 있는 유류보조금 금지를 금지보조금 항목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어업자에 대한 예외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일본, EU 등 공조국 및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 제안서에 대한 지지 확산
- ☐ 국내적으로는 의장수정안에도 면세유가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대비
 - 면세유의 특정성을 약화시키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 현재 의장안에 따르면,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의 이행유예기간 규정
 - 보조금 협상동향을 감안,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

가 협상 경과

- 수산물은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협상에서 관세감축 논의
 -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확대와 수산물 민감성 보호라는 협상 목표간 상충으로 인해, 협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의장 4차 수정안('08.12)에 따르면,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며, 주요 분야별로 무세화 협상 진행

나 주요 쟁점

- 농업협상에 비해 민감품목 보호수단이 극히 제한된 여건 하에서, 민감 수산물 보호방안 필요
 - 선진국 계수를 적용하여 관세감축시,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는 평균 약 17%('11)에서 6%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
 - 수산물 분야 무세화 협상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 중이나, 뉴질랜드 등 제안국 측의 참여 압력이 가중될 전망

다 향후 대응 방향

- 일부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양허안을 작성하고, 상대국 이의 제기시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의사를 반영토록 노력
 - 수산물 분야 무세화 협상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여 참여 불가 입장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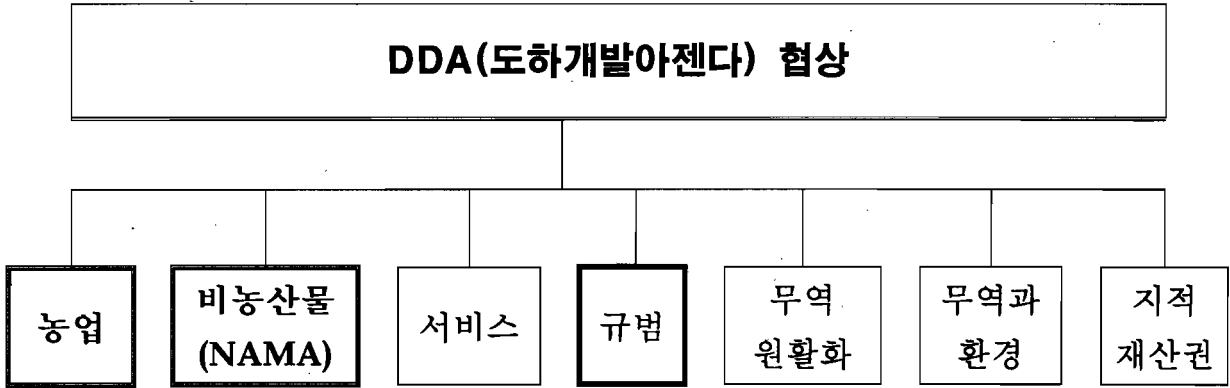
참고 1

농업협상 진행경과

- '01.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 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 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05.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 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추동력을 유지
- '06.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 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
- '06.11월 협상 재개를 선언,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
- '07.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 '08년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 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진전을 이룸
 - * '08.2월 1차 수정안, '08.5월 2차 수정안, '08.7월 3차 수정안
- '08.7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을 도출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
- '08.10월부터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논의진전을 모색, '08.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 '10.3월말 DDA 협상 현황점검(Stock-taking) 회의 개최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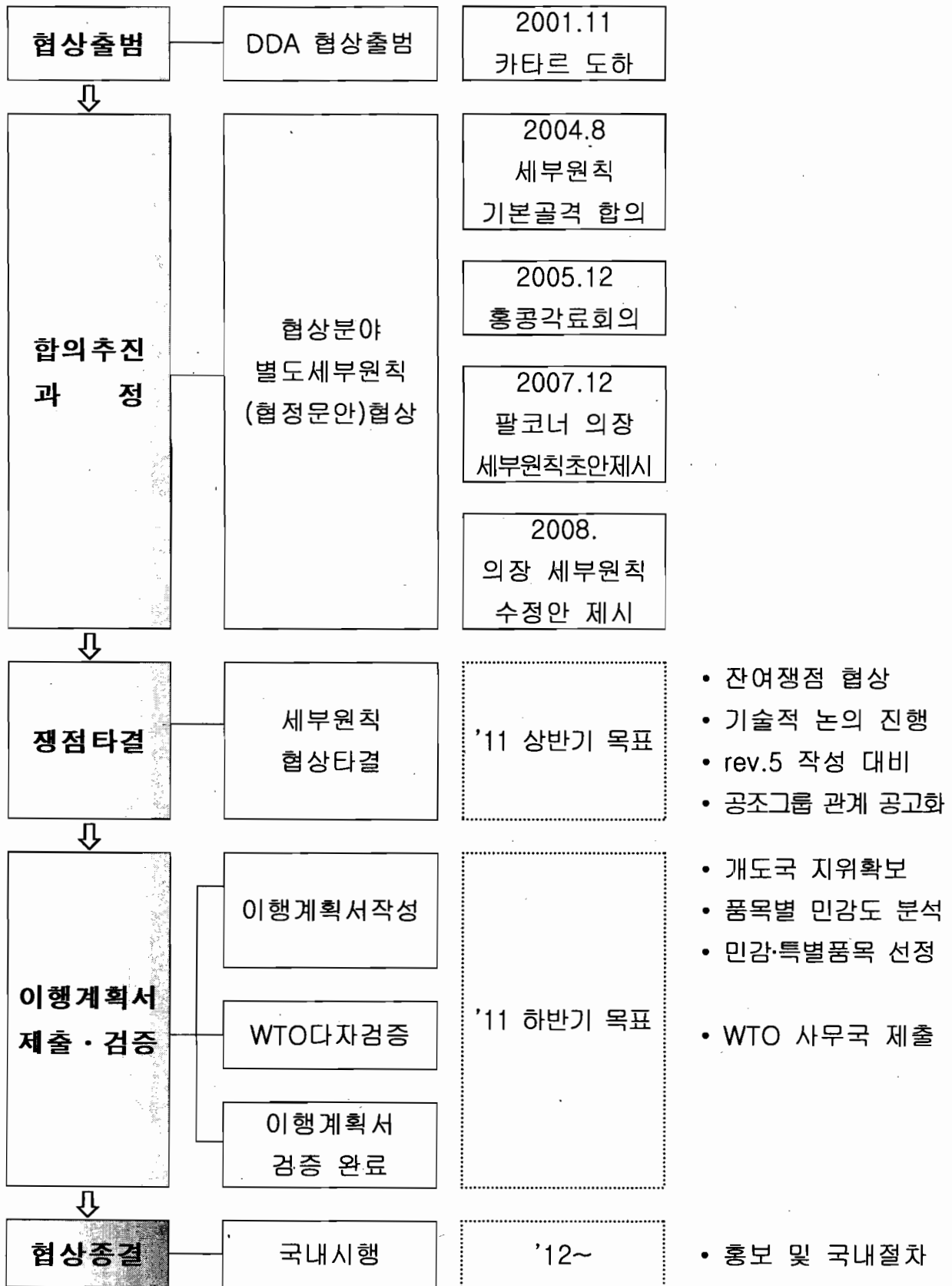
각 협상별 주요 내용



협상	분야	쟁점	현황
농업	시장접근	• 관세 감축	(협상 진행중)
	국내보조	• 국내 보조금 감축	(협상 진행중)
	수출경쟁	• 수출 보조금 감축	
NAMA	관세감축방식		합의
	분야별 무세화	• 자발적참여 전제여부	(협상 진행중)
규범	수산보조금	• 금지보조금의 범위	(협상 진행중)

참고 3

DDA 협상 주요 절차



참고 4

농업 협상 세부원칙 잔여쟁점 논의 내용

	Rev.4	주요국 입장
Blue Box상한	미국 : '95-'00년 BB 지급액에 기초, '02년 농업법 품목별 지급비율의 [110% or 120%]	- 미국 : 정치적 이슈라는 주장 -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 브라질 : 105%
Cotton	-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 BB : 일반의 1/3 설정	-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 Cotton 4 : 신속 해결 - G-20 : Cotton 4 지지
민감품목	- 개수 : 4%+ 2%(EFTA 국가 및 일본) - TRQ증량 : 소비량의 4%	-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 수출국 : 4%, 품목 추가시 보상 수준을 높힐 필요
관세상한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4 및 W/6기초로 논의 가능 -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TRQ 신설	- 신설불가/[가능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 G-10 : 도입 필요 - 수출국 : 기본 반대하나 필요시 충분한 보상 필요
관세 단순화	- 목표 : 100% 단순화/[90%] - 방식 : Annex N 적용	- G-10/EU : 90%, 85% 주장 -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 EU : Rev.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특별품목	- Entitlement :12%, Zero cut: 5% - 평균감축률: 11%	-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 인니 : SP 수치는 각료 간 결정 필요 - 미국 : 수용 불가 - 개도 수출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SSM	- UR 양허관세 초과 : 제한 인정(W7) - 120-140 : 33%, 8%P -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 G-33 : W7의 여러 조건 수용불가 -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반드시 필요 -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 브라질 : Normal trade 및 Import surge에 중점 -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열대작물/특혜잠식	- 열대작물 : 열대작물 list의 65% - 20%이하 : 철폐 - 20% 이상 : 80% 감축 - Annex H 품목은 개도국관세 감축기간(10년) 적용	- 인도 : 동 내용 논의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 재협상 곤란

참고 5**농업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시장접근분야****가. 관세감축률**

-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률을 적용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 양허관세 ≤ 20%	50%	0 < 양허관세 ≤ 30%	33.3%
2구간	20 < 양허관세 ≤ 50%	57%	30 < 양허관세 ≤ 80%	38.0%
3구간	50 < 양허관세 ≤ 75%	64%	80 < 양허관세 ≤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6단계), 개도국 10년(11단계)

- 평균감축률 설정

- 선진국은 최소 평균감축률 54%를 적용, 개도국은 최대 평균감축률 36%를 적용

나. 민감품목

-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관세세번의 4%(개도국은 5.3%)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률을 구간별 감축률의 1/2~2/3만큼 적용 하되, TRQ를 소비량의 3~4%(개도국은 2~2.7%)만큼 증량해야 함

- TRQ증량은 3년 동안 증량(단, 이행첫해 1/2만큼 증량)

- 단, 개도국은 TRQ 증량의 이행기간 조정 옵션 선택 가능

- * 민감품목 TRQ물량 산출기준이 되는 소비량 데이터는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검증하기 위해 2008.12.31일까지 website에 게재토록 규정

- 한편, 민감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세번에 구간감축률 적용하고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선진국	전체 세번의 4%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증량 (소비량대비 %)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0%	0.5% 감소	1%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3.5%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4.0%		
개도국	전체 세번의 5.3%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소비량대비 %)			
		관세 감축	원칙	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	
				10%이상	30%이상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2.0%	0.3% 감소	0.7% 감소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3%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2.7%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이행기간을 단축			
		※ 단, 3가지 옵션 중 한가지 선택 적용			
		관세 감축	이행기간	비고(적용범위 한정)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3년	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2년	1/3로 한정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1년	1/4로 한정	
		▶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일반감축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3년 연장			

- 현행 비TRQ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시 TRQ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잔여쟁점으로 남아있음

- ◆ 의장은 TRQ 신설 불가/가능 옵션을 모두 제시하면서, 최근 논의내용을 기초로 의장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별도문서로 제시
- 신설 가능범위 : 전체 세번의 1% 범위 내에서 신설 허용
 - TRQ증량수준 : 일반적인 민감품목보다 소비량의 2% 추가 증량 (TRQ신설로 기존 교역 저해시, 기존교역량에 소비량 추가)
 - 신설 TRQ의 세번과 물량을 세부원칙에 첨부하여 투명성 확보
 - 신설 TRQ의 쿼터내 세율은 0%, MFN 방식으로 운영

다.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

-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 관련 지표를 기초로 특별 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전체 세번의 12%	▶ 전체 특별품목의 평균 감축률이 11%가 되도록 함 (단, 전체 세번의 5%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면제 인정)

라. 관세상한

- ☐ 관세상한(capping)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관세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 큰 부담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 적용의 예외를 인정(단, 보상 규정)

	선진국	개도국
상한수치	100%	150%
적용제외 품목	▶ 민감품목 -단, TRQ 추가 증량(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 대한 상한 적용 제외문제가 잔여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일본, 스위스, 노웨이, 아이스랜드에 한정)	▶ 민감품목 -단, TRQ 추가증량(0.33%) ▶ 특별품목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마.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발동가능 품목수,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제한없음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은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SSM발동을 제한
- UR 양허관세 초과 SSM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전체 세번의 2.5%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140%이하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140%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은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SSM발동을 제한

바. 관세단순화

- 관세 형태의 복잡성이 관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따라 관세 단순화가 논의됨
- 전체 세번을 단순 종가세로 양허하는 안과 최소한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양허하는 방안이 병렬적으로 제시
- 전환시 AVEs 전환방식('99~01년기준)을 이용하되, AVEs가 최근년도 수입단가를 기초로 산출된 Current AVEs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전환
- 개도국은 2년의 이행기간 부여

사. 열대작물(Rev.4 新 147, 148항)

- * EU,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ACP, 미국 등이 바나나 분쟁 타협안(09.12.15)의 일환으로 열대작물 및 특혜잠식에 대해 합의, Rev.4 관련 조항(147, 148)에 대한 수정을 요청(09.12.18)
- *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 선진국은 Annex G(케언즈 List, UR List)에 나열된 품목 65% 이상에 대해 열대작물 방식(tropical treatment)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
 - 현 양허관세(종가세 혹은 종가세상당치)가 20% 이하이면 관세를 철폐하고, 20%를 초과하면 80%를 감축
 - 특혜잠식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5년간 6번 감축
 - 개도국은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경우 Annex G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권고

아. 특혜잠식(Rev.4 新 149항)

* EU 등이 바나나 분쟁 타결로 특혜잠식 조항의 수정 요청(09.12.18)

□ 新 149항

- Annex H 나열품목은 개도국 관세감축 이행 기간(10년) 적용
- Annex H 품목 중 미국/EU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의 특혜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2003~2005년 기준)의 10% 이상일 경우 out-quota 관세감축과 신규 TRQ 물량 설정을 7년에 걸쳐 이행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의 체계 >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④블루박스 (Blue Box: BB)	

-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 한도+최소허용보조 한도+블루박스 한도)을 추가적으로 감축

* 각각 개별 보조한도를 감축하면서 합계인 OTDS도 감축하도록 규정

< 감축구간/ 감축률/ 이행기간 >

구 간	OTDS규모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억달러 초과	80%	첫날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6.7% - 첫날 20% 감축,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2구간(미국, 일본)	600~100	70%		
3구간(기타 국가)	100억달러 미만	55%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나.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현행 총 AMS한도를 감축

구간	AMS규모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억달러 초과	70%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30%(선진국의 2/3) -첫날 3.3% 감축, 나머지는 8년간 균등 감축
2구간(미,일)	400~150	60%		
3구간(기타국가)	150억달러 미만	45%	첫날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품목특정 AMS 한도 설정 (이행첫날부터 적용)

- 기본적으로 과거 지급실적을 한도로 하나 일부 예외적 규정 설정

선진국	▶ '95~'00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 지급실적 ▶ 기준기간('95~'00년) 이후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 있는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통보된 평균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i) ▶ 기준기간 동안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로 지원한 품목의 경우는 UR 결과의 DM 수준(선진국: 품목 생산액의 5%) (ii)
개도국 (3개 옵션 중 선택)	▶ (a)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 지급액 - 단, 선진국의 (i), (ii)(품목생산액의 10%)도 함께 적용 ▶ (b)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생산액의 20% ▶ (c) 해당년도(in the relevant year) 총 AMS의 20%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선진국	▶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5%)을 50% 감축(생산액의 2.5%)하되, 이행 첫날에 감축 이행
개도국	▶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10%)을 33.3% 감축(생산액의 6.7%)하되, 3년동안 감축

라. 블루박스(Blue Box)

(Old BB)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 (i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 이하이거나,(or)
- (i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진다.

(New BB)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비생산시에도 지불)

-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 (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고,(and)
- (iii) 이러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이하에 대해 이루어진다.

○ 블루박스 총 한도 및 품목별 상한

- UR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블루박스 총 한도를 새로이 설정하면서, 품목별 상한도 설정

선진국	▶ 총 블루박스 상한 -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이행첫날부터 적용) ▶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 '95~'00년에 지급된 블루박스 보조금의 평균 -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5%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는 블루박스 상한의 2.5%를 상한으로 설정
개도국	▶ 총 블루박스 상한 - '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이행첫날부터 적용) ▶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 블루박스 상한의 10%를 상한으로 설정

- ※ 단, 품목특정 AMS상한을 블루박스로 전환시, 품목별 BB한도는 상기 상한을 초과 가능(전환된 AMS상한만큼 BB상한 추가, 전체 BB한도는 유지)하나,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
- ※ 한편,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BB로 전환 가능(우리나라 해당 조항)

마. 허용보조(Green Box)

<정부 서비스-일반서비스>

- 현재 농업협정문 일반서비스 항목(7개)에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항목 추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를 도울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 포함하지 않음
 - * 현행 규정은 관리가격(구매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를 AMS로 산입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로부터 보조된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거나 식량 구호 제공시에는 구매가격과 외부 참고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하지 않음

<비연계소득보조>

- 수혜자격은 고정불변기간(fixed and unchanging)내의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되, 기준기간의 예외적인 변경 인정
 - 기준기간의 예외적 변경요건으로는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규정
(구체 변경 요건)
 - ① 변경기간은 상당히 긴 과거연도, ② 수확량이나 지급단가 증가와 비연계, ③ 국내보조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

-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관련 허용보조조건을 완화
 - 손실이 과거 5개년 평균 생산액 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 가능, 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및 작물·동물의 폐기 등 다양한 재해관련 보조 규정 신설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수출경쟁분야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 수출보조는 수출보조 철폐 시한후 5년간 유지 가능(2021년 철폐)

나. 식량원조

-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도입
 -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
 -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 인정
 - 수혜국의 동종 또는 대체 품목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등

참고 6

수산보조금 협상 우리 제안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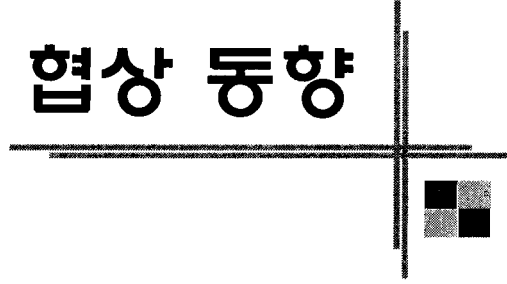
(2010. 9. 24 WTO 제출)

□ 면세유 등 운영비, 항만기반시설 등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에서 분리,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요건으로 하는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

□ 선/개도국 공히 생계형 어업에 대한 일반예외 허용

분류	의장 초안	우리나라 제안서
금지보조금	① 선박 건·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면세유 등 운영비 ④ 항구 기반시설 등 ⑤ 소득 보조 ⑥ 가격 지지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 명백히 남획상태에 있는 어족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모두 금지	① 선박 건·개조 ② 선박 제3국 이전 ③ ④ ⑤ ⑥ ⑦ 입어료 지원 ⑧ IUU 어업 ※ 명백히 남획상태에 있는 어족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모두 금지
조치가능 보조금		<u>③ 면세유 등 운영비</u> <u>④ 항구 기반시설 등</u> <u>⑤ 소득 보조</u> <u>⑥ 가격 지지</u>
일반예외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업관리제도 이행 ○ 감척 사업 지원 ○ 친환경적 어구도입	○ 선박과 선원의 안전 ○ 어업관리제도 이행 ○ 감척 사업 지원 ○ 친환경적 어구도입 <u>○ 어업활동중단 조건 생계보조금</u> <u>○ 생계형 어업</u> <u>○ 생산 비연계 소득보조</u>

Ⅱ. FTA 협상 동향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중

○ 5개 경제공동체(17개국)와 FTA 발효

* 발효 현황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 미국, EU, 페루 등 3개 경제공동체(29개국)과 FTA 타결

* 미국 : 타결('07.4), 정식서명('07.6), 국회 비준안 외통위 통과('09.4.22)

* EU : 실질적 타결('09.7), 가서명('09.10.15), 정식서명('10.10.6), '11.7.1 잠정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10.10.25)

* 페루 : 타결('10.8), 가서명('10.11.15), '11년 상반기 정식서명 예정

□ 호주·뉴질랜드, 콜롬비아·터키·GCC 등 5개 경제공동체와 협상 중

○ 호주·뉴질랜드와 4차례 이상 협상에서 협정문, 양허안 등 논의

○ 콜롬비아와는 '09. 11월 협상 개시 후 총 4차례 협상 개최

○ 터키와는 '10. 4월 협상 개시 후 총 2차례 협상 개최

○ GCC와는 '08.7월 1차 협상 이후 '09. 11월까지 3차례 협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9개 경제공동체와 협상 여건조성 중

* 중국, 일본, 한·중·일, 러시아, 남미공동시장, 이스라엘, 베트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캐나다(중단), 멕시코(중단)

○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28), 정부간 사전협의 진행 중

*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10. 9. 28~29, 북경), 2차 회의(일정 미정, 서울)

○ 한·중·일 FTA는 '10. 5월부터 2012년까지 산관학 연구 진행 예정

○ 일본과는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 캐나다와는 쇠고기 WTO 분쟁 해결에 따라 협상 재개 유동적

가. 추진 현황

□ '09.3월 초 VIP 호주 방문 시 협상개시 선언 이후 최근('11. 1월) 까지 8차례 협상 진행

○ '11년 상반기 중 상품분야에서 쇠고기, 낙농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핵심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해 본격 논의 예정

□ (상품 양허) 호주측은 최소한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 중이나, 우리는 협상 이익균형,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

* (한미 FTA 양허내용) 쇠고기 : 15년+ASG, 탈·전지분유 : 현행+TRQ 5,000톤

○ 농수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및 FTA 기대이익 균형 도출에 주력

□ (협상 진전) 우리는 핵심품목의 민감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진전 검토

○ 호주측은 조속한 한-호 FTA 타결을 위한 협상 진전 기대

나. 향후 추진계획

□ 양측은 차기 수석대표 회의를 4월중 개최(잠정), 핵심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 타진

가. 추진 현황

□ '09.12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 전체협상과 3차례 회기간 회의 개최

○ 상품, SPS분야 등은 협상 진전이 다소 미흡하나 서비스/투자 분야는 상당 수준 진전

* 민간공동연구('09.3~8월), 공청회('09.10월), 1차 협상('09. 12월, 서울), 2차 협상('10.3월, 보고타), 3차 협상('10. 6월, 서울), 4차 협상('10. 10월, 칼리)

□ '11.2.7~9일 회기간 협상(LA)에서 양측은 2차 상품양허 수정안('10.12월 교환) 및 분과별 통합 협정문을 중심으로 구체 협의 진행

○ (상품 양허) 양측 관심품목과 민감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 콜측은 육류, 낙농품, 과일, 화훼 등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은 국내 농수산물분야의 민감성 때문에 양허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응

○ (협정문) 농업섹션 구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

나. 향후 추진계획

□ 양측은 수석 대표간 협의(4월중, 잠정)를 개최, 주요 품목의 양허 수준에 대한 집중적 의견교환 예정

가. 추진 현황

□ '10. 3월,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3차례 협상 진행

○ 유럽, 중동 연결의 거점 확보 및 경제 전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 민간 공동연구('08.9~'09.5),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10.2.19, 외교부)

□ '10. 4월, 제1차 협상 개최(터키, 앙카라)

○ 협상운영을 위한 기본세칙(TOR) 합의 및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분야별 양측 입장 교환

○ 위생 및 검역 조항은 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는 수준으로 합의

□ '10. 7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기준세율 등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안대로 대부분 합의

○ 상품양허 수준과 유형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 확인

□ '11.3월, 제3차 협상 개최(터키, 앙카라)

○ 우리와 터키 측의 FTA에 대한 접근방식(한-EU FTA 연장선 vs. 무역 역조의 구조적 개선) 및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입장차 재확인

-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한 양측의 동등한 양허 주장

- (터키측) 제조업/농수산업 등 산업발전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양허 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협상은 터키측 입장변화에 따라 개최여부 검토

○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한 동등한 양허 요구 입장을 견지하고, 터키측 공산품 양허개선 정도에 따라 탄력적 대응

가. 추진 현황

□ 민간공동연구('05.3~'06.11), 산관학 공동연구('07.3~'10.5.28)
종료 후 정부간 사전협의를 진행 단계

* 농업분야 보호 등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08.6~'09.12)

○ 산관학 보고서 농어업 분야 소결론에서 양국은 패키지 방식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민감 분야를 처리할 것을 권고

○ 본협상 개시 이전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1차 사전협의를('10. 9.28~29, 북경), 2차 사전협의를(일정 미정)

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전협의를 단계에서부터 우리 농수산업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도록 대응

□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한중 FTA 종합 대응체제 구축

○ 「한·중 FTA T/F」를 운영('10.7월~)하여 중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 및 생산, 교역통계, 관세 분석 및 단계별 대응책 마련 중

*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홍콩, 마카오, 코스타리카(9개)

○ 향후 본 협상개시에 대비 중국에 전략적으로 제기할 이슈 발굴

○ 품목별 영향추정 및 제도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추진

가. 추진 현황

□ '03.10월 협상 개시 선언 후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일측의 소극적 태도로 '08년 초까지 냉각기 유지

○ 한·일 정상회담 합의('08.4)에 따라 협상재개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6차례 개최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04년 한·일 FTA 협상 중단 당시 주요 쟁점 사항 : 일측의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 비관세장벽 개선, 양국간 산업협력 등

□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수준,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 현저

○ (일본측) 양허수준이나 비관세장벽 개선 여부는 정식협상 개시 후 논의 가능하며, 우선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

* 최근 일본은 TPP 참가검토 발표, '식량 및 농림어업 재생 추진본부' 설치 등 적극적인 FTA 추진의지 표명

○ (우리측) 일본측의 공식적·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만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응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산업협력 등에 대한 일측의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상의 재개 여부를 판단

가. 추진 현황

- 3국간 민간 공동연구('03~'09, 7년간) 후 3국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로 격상 합의('09.10.10, 북경)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10.1.26)에서 2012년까지 공동연구 종료에 노력하기로 합의
 - (진행방식)'10년 3회 개최, (연구범위)3국간 FTA 추진 타당성 및 협정범위, (보고체계)매년 3국 정상회의에 진전사항 보고 등
- 1차 회의('10.5, 서울)는 운영세칙 채택, 공동연구결과 발표 등 진행
- 2차 회의('10.9, 동경)는 상품 및 협력 분야 논의 진행
- 3차 회의('10.12.1~3, 중국)는 투자·서비스 분야, 내년 일정 등 논의
 - 내년부터는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 개시('11년 4회 회의 예정)
 - 원산지, SPS, 비관세장벽(TBT) 등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물분야는 중국이 비교 우위인 점을 감안,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부터 체계적·전략적 대응으로 민감성 반영 노력
 - * 한중일 FTA 완전 관세철폐시 GDP 증가효과(민간공동연구): 한국 3.5%, 일본 0.37, 중국 0.3
- '11년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시 우리측 입장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 일본에 대한 수출, 식품안전, 농수산물분야 협력 등 공세적 측면도 균형 있게 접근

가. 추진 현황

□ '11. 3. 21(월) 한 · 페루 FTA 정식서명 예정(서울)

○ '10. 8. 30 제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후 '10.11.15 가서명

□ 한 · 페루간 농수산물 교역액이 적고 민감품목이 장기 폐지로 타결되어 국내 영향은 적을 전망

○ 농산물 45.9%(수산물 16.6%)에 대해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10년 이상)

* 농수산물 수입('09년) : 6,118만불(오징어 3,053만불, 커피 1,912, 봉장어 410 등)

- 농수산물 107개 품목(수산 2개 포함)을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 페루측 관심 품목인 오징어 10년, 봉장어 7년간 관세 폐지

□ 피해 영향분석 결과 수입실적이 많은 오징어, 봉장어를 중심으로 생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밀분석 중

□ 피해 예상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보완대책 강구 중

* 수산업 어촌종합대책 및 한 · 미 FTA 보완대책 : 12.6조원('04~'13년)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 관련자 및 단체, 학계 등을 대상 협상 결과 홍보

□ 농어민, 관련단체로부터 주기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내 대책 지속적 보완 추진

가. 추진 현황

□ '09.3월 초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시 한·뉴 FTA 개시 선언 후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

* 민간공동연구('07.2~'08.3), 1차 협상('09.6), 2차 협상('09.9), 3차 협상('09.12), 4차 협상('10.5)

□ '10.5월(웰링턴) 제4차 협상에서는 기 교환한(4.30) 상품 리퀘스트에 대한 입장 교환 및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논의 진행

○ 뉴측은 자국의 리퀘스트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는 표준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관심 품목을 반영한 수정안 교환 제안

* 뉴측은 농수산물 1,950개 품목 중 우리측 양허초안에서 즉시 철폐한 331개 품목을 제외한 1,639개 품목 전부에 대해서 리퀘스트 제시

○ 우리측은 뉴측 리퀘스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한 논의나 양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대응

나. 향후 추진계획

□ 4차 협상 후 5차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미합의

○ 우리측은 뉴측의 과도한 요구 수준의 완화 등 모멘텀이 마련된 후에야 다음 협상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뉴측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

참고 1

FTA 추진 현황

구 분	상대국	추진 상황	비 고
발효 ; 5개 경제 공동체 (17개국)	칠레	○'99.12 협상개시→'02.10. 타결 ○'04.4. 발효	
	싱가포르	○'04.1. 협상개시→'04.11. 타결 ○'06.3. 발효	
	EFTA (4개국)	○'05.1. 협상개시→'05.7. 타결 ○'06.9.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	○'05.2. 협상개시→'06.4. 상품타결 ○'07.6. 상품협정 발효 ○'09.5 서비스발효, ○'09.4 투자타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리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06.3. 협상개시→ ○'08.9. 12차(실질 타결) ○'10.1. 발효	○'09.2월 가서명, 72 인도 내각 승인 87 정식 서명, 826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협상타결 (완료); 3개 경제공동체 (28개국)	미국	○'06.6. 협상개시→'07.4. 타결 * '08.7.1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10.11. 추가협상개시→'10.12. 타결	○18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08.10.8) - 외통위 통과('09.4.22)
	EU (27개국)	○'07.5. 협상개시, '09.3. 8차, '09.10. 가서명 * 7.13 타결(한-스웨덴 정상회담) ○'10.10. 6 정식서명	○유럽의회 승인('11.2.17) ○'11.7. 발효 예정
	페루	○'09.3. 1차(서울), '09.5. 2차(리마) ○'09.6. 3차(서울), '09.10. 4차(리마) ○'10.8. 30. 5차(리마) 협상타결 ○'10.11. 가서명	○'11년 3.21(월) 정식서명 예정
협상 중 ; 5개 경제 공동체 (11개국)	GCC (6개국)	○'08.7. 1차(서울), '09.3. 2차(리야드) ○'09.7. 3차(서울)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호주	○'09.5. 1차(캔버라), '09.9. 2차(서울), '09.11. 3차(캔버라), ○'10.3. 4차(서울), '10.5. 5차(캔버라) ○'10.10.(회기간, 캔버라), '11.1(회기간, 서울)	○ 6차 일정 미정
	뉴질랜드	○'09.6. 1차(서울), '09.9. 2차(웰링턴) ○'09.12. 3차(서울), '10.5. 4차(웰링턴)	○ 5차 일정 미정
	콜롬비아	○'09.12. 1차(서울), '10.3. 2차(보고타) ○'10.6.14-18. 3차(서울), '10.9.6-10. 회기간(워싱턴), '10.10.4-8. 4차(칼리), '11.2.7-9. 회기간(LA)	
	터키	○'10.4.26-30. 1차(앙카라), '10.7.19-23. 2차(서울), 3차 (앙카라) '11.3.7-11	
협상중단 또는 준비중 ; 10개 경제 공동체 (17개국)	캐나다	○'05.7. 협상개시 ○'08.3. 13차(오타와)	○ 14차 회담 일정 미정 - 쇄고기 제소, 한-EU FTA 등과 연관
	멕시코	○'07.12. 1차(멕시코시티) ○'08. 6. 2차(서울)	○'06.2월 이후 3차례 SECA 협상 후 '07.7월부터 FTA로 변경, 협상재개
	일본	○'03.12. 협상개시 ○'04.11. 협상중단	○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 6차례 개최 ('08.6월, 12월, '09.7월, 12월 '10년9월, 11월)
	중국	○'05~'06년 : 민간공동연구 ○'07.3. 산관학 공동연구(공동5, 전문가3) ○'10.5.28 산관학 종료 ○1차 사전 협의('10. 9. 28~29)	○2차 사전협의 미정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09.10. 산관학 공동연구 격상 합의 ○'10.5.6-7 산관학 1차(서울), 산관학 2차('10.9.1-3, 동경), 산관학 3차('10.12.1-3)	
	러시아	○'07.10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 '08.7. 제2차 회의	
	MERCOSUR (4개국)	○'05.5. ~'06.11. 민간공동연구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09.7 무역협정(TA) 추진 MOU 체결
	이스라엘	○'09.8.17 민간공동연구 개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08.12.9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5개국
	베트남	○'10.3.23 공동연구 개시 합의 ○'10.6.23-24 공동연구 1차(서울) ○'10.10.12-13 공동연구 2차(하노이)	○3차 예정('11.3.16-17, 서울)

참고 2

FTA 대상국별 교역 규모('10)

(단위 : 백만불, %)

협상 경과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전체농수산물 대비(소계 농수산물수입)
발효 (5개)	칠 레	2,947	45(0.15)	4,221	667(15.80)	
	싱가폴	15,244	91(0.60)	7,850	85(1.08)	
	EFTA	3,522	7.6(0.22)	5,699	149(2.61)	
	ASEAN	53,195	719.8(1.35)	44,099	3,422(7.76)	
	인 도	11,435	17(0.15)	5,674	393(6.93)	
	소 계	86,343	839.9(0.97)	67,543	4,716(6.98)	18.29
타결 (3개)	미 국	49,816	518(1.04)	40,403	5,959(14.75)	
	E U	53,507	332.6(0.62)	38,721	1,955(5.05)	
	페 루	944	0.3(0.03)	1,039	76(7.31)	
	소 계	103,323	850.9(0.82)	80,163	7,990(9.97)	30.98
협상 진행 중 (5개)	GCC	12,530	246(1.97)	66,441	27.7(0.04)	
	호 주	6,642	82(1.23)	20,456	2,212(10.81)	
	뉴질랜드	918	93.9(10.23)	1,176	846(71.94)	
	콜롬비아	1,389	0.4(0.03)	432	74(17.13)	
	터 키	3,753	7.0(0.19)	516	54(10.47)	
	소 계	25,205	429.3(1.70)	89,021	3,213.7(3.61)	12.46
협상 중단 (3개)	캐나다	4,102	52.5(1.28)	4,351	1,062(24.41)	
	멕시코	8,864	9.6(0.11)	1,521	103(6.77)	
	일 본	28,176	1882.6(6.68)	64,296	658(1.02)	
	소 계	41,142	1,944.7(4.73)	70,168	1,823(2.60)	7.09
향후협상 대비 (6개)	중 국	116,838	787.3(0.67)	71,574	4,323(6.04)	
	러시아	7,760	235.6(3.40)	9,899	738(7.46)	
	MERCOSUR	8,952	14.8(0.17)	5,543	2,018(36.41)	
	남아공	1,668	8.6(0.52)	2,272	131(5.77)	
	이스라엘	1,059	15.1(1.43)	769	12(1.56)	
	베트남	9,652	153.1(1.59)	3,331	623(18.70)	
	소 계	145,929	1,214.5(0.83)	93,388	7,845(8.40)	30.48
총 계		401,942	5,279.3(1.31)	400,283	25,587.7(6.39)	

※ 농수산물 총수입액 25,787백만불 발효국가농산물수입액/농산물총수입액(산출법 : {18.29=4,716(발효국총농산물수입액)/25787(농산물·총수입액)}*100

참고 3

한·호주 교역 현황

□ 대 호주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3,272	3,378	3,812	4,962	4,691	5,171	5,243	6,642
수입	5,916	7,438	9,859	11,309	13,232	18,000	14,756	20,456
무역수지	-2,644	-4,059	-6,047	-6,617	-8,541	-12,829	-9,513	13,814

*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금은 및 백금

* 주요 수입 품목: 석탄, 철광석, 원유, 알루미늄, 천연가스, 쇠고기

□ 대 호주 농림축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A)	농산물	20,800	34,800	49,000	62,000	65,037	71,971	68,373
	축산물	3,700	4,900	5,000	5,900	6,178	5,819	4,726
	임산물	200	400	500	600	906	973	1,152
	수산물	6,600	5,000	4,700	5,300	6,410	7,960	7,094
	합계	31,300	45,100	59,200	73,800	78,531	86,723	81,345
수입(B)	농산물	665,400	615,100	762,600	683,400	901,967	930,718	1,242,430
	축산물	461,400	661,300	815,200	897,100	825,462	608,960	841,889
	임산물	72,600	83,100	79,000	112,100	119,642	61,098	46,539
	수산물	900	1,200	1,400	1,900	73,808	102,340	3,618
	합계	1,200,300	1,360,700	1,658,300	1,694,500	1,920,879	1,703,116	2,134,476
무역수지(A-B)		-1,169,000	-1,315,600	-1,599,100	-1,602,700	-1,842,348	-1,616,393	-2,053,131

□ 대 호주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라면	원당 638,965
2	커피조제품	쇠고기 633,949
3	곡류가공품	밀 253,324
4	비스킷	소금 114,573
5	쌀	루핀종자 69,788
6	기타해조류	사료용근채류 51,937
7	기타수산물가공품	보리가루 48,140
8	코코아조제품	면 47,395
9	빵	유채유 39,546
10	발효유	원목 36,850

참고 4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 대 콜롬비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 출	624	913	1,121	1,091	797	1,389
수 입	137	206	116	143	125	432
무역수지	487	707	1,005	948	672	957

□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합 계	124	159	221	213	85	476
	- 농산물	61	72	111	106	64	474
	- 축산물	0	0	4	0	0	0
	- 임산물	0	0	43	91	0	1
	- 수산물	63	87	63	16	21	1
수 입	합 계	32,499	43,860	36,324	47,752	56,823	74,278
	- 농산물	30,764	42,291	34,321	47,037	55,234	72,479
	- 축산물	1,701	1,435	1,910	357	1,105	1,487
	- 임산물	0	39	4	4	0	24
	- 수산물	34	95	89	354	484	288

□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별 분석

(단위 : 천불)

품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채소주스	0	0	28	42	42	99
김	13	6	13	16	21	0.07
감초엑기스	0	0	1	12	9	19
기타음료	2	2	0	0	3	51
인삼음료	2	0	2	2	3	3

□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별 분석

(단위 : 천불)

품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커피	15,398	27,319	25,670	31,129	42,327	49,978	65,661
커피조제품	418	279	620	1,905	2,739	2,576	3,497
우황	415	1,701	1,435	1,905	355	1,104	1,486
기타과실류	1,086	604	534	738	746	566	788
사탕수수당	38	1,517	14,420	78	215	555	325

* 기타 과실류 :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

참고 5

한·터키 교역 현황

- (전체 교역) 양국간 교역액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08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10년 43억불로 회복 추세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2,782 (△18.1)	3,036 (△9.1)	4,087 (△34.6)	3,773 (▼7.7)	2,661 (▼29.5)	3,753 (△41.1)
수 입	127 (△22.5)	194 (△52.5)	282 (△44.9)	362 (△28.5)	434 (△20.0)	516 (△18.8)
무역수지	2,655	2,842	3,805	3,411	2,227	3,237
총교역액	2,909	3,230	4,369	4,135	3,095	4,269

- (농수산물 교역) 지속적 수입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對 터키 수출은 '08년 이후 감소 추세

○ 주요 수입품 : 잎담배, 기타 연체동물, 해바라기씨유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 커피조제품, 담배 등이 수출되나, 연도별 변동폭이 큼

(단위 : 천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입	합 계	35,568	39,350	44,035	45,177	54,190
	- 농산물	21,424	25,069	27,250	26,849	36,579
	- 축산물	383	880	2,022	843	232
	- 임산물	3,223	3,929	4,307	4,004	5,073
	- 수산물	10,537	9,471	10,455	13,482	12,306
수 출	합 계	3,469	4,627	2,166	14,953	10,023
	- 농산물	1,566	1,366	1,707	12,946	8,961
	- 축산물	626	1,797	28	0	10
	- 임산물	1,093	632	230	1,428	1,240
	- 수산물	183	832	212	579	228

참고 6

한중 교역 현황

□ 대 중국 농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여 약 43억불 규모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수 출	전체상품	61,915	69,459	81,895	91,389	86,703	116,838	89%
	농식품	340	336	452	539	565	787	131%
	- 농산물	185	217	257	303	327	447	142%
	- 축산물	6	5	7	14	18	23	283%
	- 임산물	40	38	30	32	74	86	115%
	- 수산물	109	76	158	190	146	231	112%
수 입	전체상품	38,648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85%
	농식품	3,155	3,236	4,173	3,627	3,676	4,323	37%
	- 농산물	1,757	1,551	2,375	1,950	1,702	1,946	△100%
	- 축산물	71	93	100	85	42	53	△25%
	- 임산물	388	555	625	588	1,078	1,228	216%
	- 수산물	939	1,037	1,073	1,004	854	1,096	17%

□ 우리측 주요 수출 품목은 자당, 커피조제품, 오징어, 라면 등

(단위 천불)

품명	중화비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자당	17%	36,830	51,463	53,943	49,757	56,485	96,621	162%
커피조제품	17%/30%	13,440	13,409	15,954	14,457	26,551	43,196	221%
오징어	5%	32,759	11,031	63,766	70,802	46,343	40,378	23%
라면	15%	12,566	14,936	24,868	29,083	32,119	28,349	126%
혼합조제식료품	32%	12	0	3	19,654	18,678	24,364	202,933%

□ 수입은 쌀과 전분박의 수입액이 '05년 대비 '10년 약 300%이상 증가

(단위 : 천불)

품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0/'05(%)
쌀	33,453	68,154	83,093	159,231	159,231	136,181	307%
대두	28,466	24,666	82,942	129,696	140,730	35,654	25%
문어	99,981	118,385	116,645	103,374	116,812	152,281	52%
조기	142,343	147,616	164,512	95,562	110,727	150,927	6%
전분박	25,713	33,688	54,537	94,018	103,620	117,272	356%
고추	49,654	58,612	80,724	71,488	80,969	109,183	120%
기타어류	96,704	82,094	87,556	62,945	70,572	87,419	△10%
김치	51,312	87,936	110,842	61,326	66,335	102,018	99%
갈치	53,733	49,201	49,907	55,120	64,184	73,187	36%
기타채소	30,692	40,413	45,238	44,352	49,994	70,039	128%
아귀	29,766	46,872	59,933	40,454	45,268	69,930	135%
기타과실	41,568	52,721	58,829	40,911	44,543	44,852	8%

참고 7 한·일본 교역 현황

□ 대 일본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전체	2,419백만불	2,501	1,997	2,066	2,672
	농수산물	1,311,035	1,219,621	1,438,441	1,550,424	1,882,642
	농산물	569,827	561,020	668,694	764,067	967,444
	축산물	39,594	40,965	50,624	19,772	24,569
	임산물	41,642	44,249	33,167	32,451	31,146
	수산물	659,972	573,387	685,956	734,134	859,483
수입	전체	4,668백만불	4,968	3797	5,156	5,928
	농수산물	437,244	529,846	531,678	536,161	658,800
	농산물	158,815	201,249	249,877	301,312	343,559
	축산물	44,610	43,403	42,378	10,271	14,219
	임산물	9,294	11,440	14,844	29,515	74,818
	수산물	224,525	273,754	224,579	195,063	226,204
무역수지	전체	△2,249백만불	△2,467	△1,800	△3,090	△3,256
	농수산물	873,791천불	689,775	906,763	1,014,263	1,223,842

□ 대 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소주	101,712	명태	41,533
2	눈다랑어	100,346	돔	24,077
3	곡물발효주	96,467	게	22,705
4	김치	82,781	동식물 유지	22,016
5	파프리카	58,277	소오스조제품	15,756
6	설탕과자류	56,412	우렁쌈이	15,641
7	넙치(활어)	53,341	필터담배	14,795
8	라면	39,053	청주	13,691
9	자당	36,358	향미조제품	11,896
10	황다랑어	36,351	갈치	11,707

참고 8

한·페루 교역 동향

□ 대 페루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감(%)
수 출	282,285	358,875	466,161	720,004	641,426	944,438	27.3%
수 입	249,489	675,897	1,039,888	903,894	919,364	1,038,932	33.0%
무역수지	32,796	-317,022	-573,727	-183,890	-277,939	-94,494	

* 자료 : 한국 무역협회(KITA)

□ 한·페루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
농림축수산물	수출 367	246	116	674	863	871	18.9%
	수입 30,551	49,700	53,047	70,464	61,177	76,578	20.2%
농산물	수출 314	170	114	529	755	848	22.0%
	수입 6,302	12,028	15,125	23,292	20,379	34,446	40.5%
축산물	수출 10	56	-	53	2	0.5	-
	수입 303	632	398	519	173	296	△0.5%
임산물	수출 20	15	-	78	50	1	△45.1%
	수입 10	49	94	337	366	322	100.2%
수산물	수출 22	5	3	13	56	21	△0.9%
	수입 23,937	36,990	37,430	46,316	40,259	41,514	11.6%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 주요 수출입품목('10년 기준)

수출품목	물량(톤)	금액(천불)	수입품목	물량(톤)	금액(천불)
합계	363	810	합계	31,846	74,595
혼합조제식료품	222	417	커피	7,333	32,109
라면	42	108	기타연체동물	6,212	14,066
기타사료용조제품	10	86	오징어	11,742	11,517
곡류조제품	5	44	붕장어	1,566	6,671
커피조제품	15	42	기타 수산물분	2,972	5,029
소주	22	32	어류유지	1,017	2,569
권련	1	27	배합사료	637	868
고등어	26	20	캐비아	187	853
기타음료	19	20	아스파라거스	70	497
커피	1	14	어란	110	416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참고 9**한·페루 양허 개요****□ (수산물) 가장 민감한 오징어 양허기간 장기화에 노력**

- 오징어 관세(10~22%) : 냉동(22%), 자숙·조미(20%), 건조(10%)는 10년간 관세 폐지
 - 활어(10%), 염장(10%), 훈제(20%)는 7년, 통조림(20%)은 5년 양허
- 봉장어(10~20%) : 봉장어 전체 세번 7년간 관세 폐지
 - 냉동피레트(10%), 냉동(10%), 신선냉장(20%), 피레트·연육·기타 신냉(20%), 활어(10%)

□ (과채류) 포도, 오렌지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일부 과채류 단기 양허

- 포도(45%) : 우리 성출하기(5~10월)는 현행관세 유지, 비출하기(11~4월)는 5년간 관세폐지
- 오렌지(50%) : 우리 성출하기(11~4월)는 현행관세 유지, 비출하기(5~10월)에는 10년간 관세폐지
- 망고(30%)는 10년간 장기로 관세 폐지
- 아스파라거스(20~27%)는 3~5년간 폐지, 바나나(30%)는 5년간 폐지
 - * 바나나 : 한·미 5년, 한·EU 5년

□ 페루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목인 7개 품목(18개 세 번)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 10년간 폐지+ASG : 닭고기 냉장육(18%), 오리 냉동육(18%), 무당연유(89%), 체다치즈(36%), 녹두(607.5%)·팥(420.8%)
- 16년간 폐지+ASG : 천연꿀(243%), 맨더린(144%)

□ 쌀,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명태, 민어 등 107개 품목(HSK 기준 : 농산물 105개, 수산물 2개)은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참고 10 한 · 뉴질랜드 교역 현황

□ 대 뉴질랜드 교역현황

(단위 : 천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수출	전체	672,981	699,025	824,785	890,761	918,464
	농수산물	53,268	84,445	78,319	90,174	93,675
	농산물	12,014	12,948	14,338	15,620	16,867
	축산물	1,859	3,104	3,309	3,998	4,909
	임산물	18	100	60	95	25
	수산물	39,377	68,293	60,612	70,461	71,873
수입	전체	967,477	1,171,198	1,121,669	879,361	1,175,909
	농수산물	715,682	828,909	863,612	658,897	781,592
	농산물	74,825	92,458	93,320	89,588	82,129
	축산물	293,685	322,609	361,240	231,799	332,159
	임산물	328,956	394,858	392,613	319,463	350,682
	수산물	18,216	18,984	16,439	18,047	16,623
무역수지	전체	-294,496	-472,173	-296,884	11,400	-257,445
	농수산물	-662,414	-744,464	-785,293	-568,723	-687,917

□ 주요 수출입품목('10)

순위	수출품목	금액(천불)	수입품목	금액(천불)
	합계	76,019	합계	882,314
1	기타어류	26,568	침엽수원목	312,190
2	오징어	27,074	쇠고기	120,425
3	대구	6,012	치즈	77,755
4	단백질류	4,678	펄프	64,255
5	라면	4,441	키위	48,893
6	커피조제품	3,870	기타낙농품	33,943
7	비스킷	996	카세인	25,673
8	빵	841	침엽수제재목	23,402
9	기타음료	783	분유	14,969
10	곡류가공품	756	버터	12,174